



농림축산식품부

해명자료

2016년 10월 3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정현출 과장, 김소형 사무관(044-201-1719)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강영규 과장, 문상호 사무관(044-215-7351) 제공일 : 10월 31일(총 4매)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 류중재 과장, 진정용 서기관(044-203-4141)

“1조 한·중 FTA 농어촌상생기금… 미르재단 데자뷔?” 보도 관련 해명 한국경제(2016.10.30)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10월 31일자 A2면에서 농해수위에서 ‘FTA농어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초 농어촌상생기금 출연대상에 포함됐던 정부가 제외되어 민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
-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상생기금 출자자로 ‘정부 또는 정부 외(外)의 자’로 정했지만, 이번 통과된 안에는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로 확정됐다”라고 보도
- 또한, “농어촌상생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보게 될 수출 기업들로부터 10년 간 1조 원을 걷어 피해 농어촌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일종의 무역이득공유제와 비슷하다”라고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작년 11월 30일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 원 씩 10년간 총 1조 원의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당시 여야정 합의에도 정부는 기금의 출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합의 직후 정부 합동 브리핑(15.12.1)에서도 상생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이를 반영해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대표 발의한 ‘FTA 농어업법’ 개정안에도 기금 출연대상은 ‘정부 외의 자’만 규정하고 있었으며, 20대 국회에 제출된 여당 안(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상생기금 출자자에 정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농어촌상생기금이 “일종의 무역이득공유제와 비슷하다”는 해석은 관련 논의 진행경과를 고려할 때 무리가 있습니다.
- 당초 제안된 소위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 또는 부담금으로 환수하여 농어촌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여야정협의체에서 수용하기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 그 대안으로, FTA와 관련된 수출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촌상생기금을 마련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입니다.
- 즉, 농어촌상생기금은 민간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와 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며, 준조세 성격의 모금을 통해 강제로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생기금의 취지와 기부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적극 홍보하고, 상생기금 운영 사무국 구성 등을 측면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 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 재단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한다.
- 동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단 명에 “농어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